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령집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目 次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1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1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8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2002. 5. 13. 법률 제6698호</p> <p>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p> <p>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젓, 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p>2002. 11. 14. 대통령령 제 17778호</p> <p>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p> <p>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9호</p> <p>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생산물”이라 함은 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꿀벌·오리·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 및 평에서 생산된 식육·뽕·젓·벌꿀 및 알을 말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3조(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 ①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이하 “자조활동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미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사업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3조(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활동자금의 명칭 2. 자조활동자금의 목적 및 내용 3. 수입 및 지출계획 4. 2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운영의 방법 및 절차 <p>제4조(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 설치) ①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축산물에 2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공동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준비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자 8인 이하 2.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 3. 학계인사·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 <p>③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 사업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4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이 아니면 한우자조활동자금, 양돈자조활동자금, 낙농자조활동자금, 산란계자조활동자금, 육계자조활동자금의 명칭 또는 이와 각각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5조(재원) 자조활동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이하 “거출금”이라 한다) 2.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p>(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p> <p>⑤공동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4.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p> <p>제6조(거출금 조성) ①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③축산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투표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조(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 등) ①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10일 전까지 그 회의목적과 안전 및 회의일시·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p> <p>③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p> <p>④축산단체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투표결</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7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축산업자는 제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p> <p>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p> <p>③대의원의 총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 선출구별 대의원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총수는 축산업자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매체에 의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간지 2. 농·축산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④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안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2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우 : 250명 2. 젖소 : 150명 3. 돼지 : 200명 4. 육계 : 150명 5. 산란계 : 150명 6. 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 각 50명 <p>제3조(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 기준 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p>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⑤대의원 당선자는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2인 이상의 동점자로 인하여 그 선거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동점자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지역안 축산업자의 수 및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두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조(가축사육두수의 조사기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수 등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사육두수, 사육기간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자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⑦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정통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 및 기간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통계로 당해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7조(대의원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p> <p>②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후보자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p>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8조(대의원 변경의 요구) ①축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이상 또는 전</p>		<p>④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p> <p>⑤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p> <p>⑥축산단체는 투표장소에 투표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⑦축산단체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⑧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년도말 기준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선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그 밖에 거출금 납부의무부여에 대한 축산업자의 새로운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지체없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의무 여부에 대한</p>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축산단체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투표로 거출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즉시 수납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투표실시 전에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④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변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유와 찬반 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와 투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와 투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제8조(대의원 변경요구 등의 공표)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9조(대의원회)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축산단체는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둔다.</p> <p>②대의원회는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③축산단체의 장은 년 1회 이상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운영결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대의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거출금의 한도) ①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한다.</p>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급과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그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p> <p>제11조(거출금지수의 위탁) ①축산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업자는 당해 수납기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축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에 위탁한 후 수납을 수납기관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p>		<p>제9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거출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축산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업자 아닌자는 당해 가축을 매도(위탁을 포함한다)한 축산업자로부터 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p> <p>④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축산업자 아닌 자가 거출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살 또는 집유 등을 거부할 수 있다.</p> <p>⑤수납기관은 수납한 거출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별로 축산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⑥수납기관의 납부자에 대한 납부안내, 거출금의 구분회계 및 축산단체에 대한 거출금의 지급절차 등 거출</p>		<p>제10조(거출금의 수납·관리) ①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축산단체가 작성한 거출금의 납부안내서를 당해 작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②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의</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과오납금의 환급) 축산단체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축산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p> <p>제13조(자조활동자금의 용도) 자조활동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 소비홍보 2.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③수납기관은 거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축산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절차)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축산단체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축산단체는 반기별로 거출금의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급한 때에는 환급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4.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4조(자조활동자금의 운용) ①자조활동자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용한다.</p> <p>②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p> <p>③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제12조(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축산단체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④자조활동자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조활동자금 조성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15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자조활동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3. 자조활동자금 운영에 관한 감사 4.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5.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6. 그 밖의 자조활동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는 자조활동자금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거출금으로 조성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25인 이하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단체의 장 2.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 		<p>제13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축산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업자 11인 이하 2. 학계인사·소비자·관계공무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3. 농림부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p> <p>4.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위촉하는 자</p> <p>5.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p> <p>6. 수납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촉하는 자</p> <p>7.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업체 또는 기관이 위촉하는 자</p> <p>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감사 2</p>		<p>제14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부 소속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인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p> <p>⑤감사는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p>		<p>제15조(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지도·감독)①농림부장관은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활동자금을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농림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보조하기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제19조(권한의 위임)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0조(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22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p>	<p>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출금의 수납중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출금의 납부업무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p>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p> <p>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p>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축산물의소비축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전에 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축산단체의 장이 되며, 그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축산업자이어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운용비용은 해당 축산단체가 이를 부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수 배분기준(제3조제1항관련)

선출구별 대의원수 = (선출구별 축산업자수 ÷ 전체 축산업자수 × 대의원의 총수 × 0.5) + (선출구별 가축사육마리수 ÷ 전체 가축사육마리수 × 대의원 총수 × 0.5)

※ 비고 : 선출구별 및 전체 축산업자수와 선출구별 및 전체 가축사육마리수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한다.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제2호의 같은 목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의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축산 자조활동자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출금의 수납 중지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1항제3호	300	500	700
라.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출금의 납부 업무수탁을 거부한 자	법 제22조 제1항제4호	500	700	1,000
마.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출금의 납부 업무수탁을 중단한 자	법 제22조 제1항제4호	400	600	900
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 자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2조 제1항제5호	300	500	700
사.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2항	150	250	400
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허위로 한 자	법 제22조 제2항	200	300	500
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2조 제3항	50	150	200
차.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법 제22조 제3항	100	200	300